

어린이활동공간 관련 환경보건법

Environmental Health Act of Children's Activity Zones



이 지 영 / 인하대 의과대학 의과학연구소 연구원
 Lee, Ji-Young / Researcher, Inha Research Institute of Medical Sciences
 keyma@hanmail.net

1. 시작하며

최근 들어 아토피피부염, 천식 등 민감계층인 어린이를 중심으로 알레르기질환 등의 환경성 질환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의 유통과 사용량의 증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증가로 인한 실내공기오염의 악화 등으로 환경성 질환이 증가하여 어린이의 약 16% 정도가 천식 등의 알레르기질환을 앓고 있다.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신경, 호흡, 생식기관의 발달이 불안정하여 유해물질 노출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오염에 가장 민감한 어린이 건강에 환경정책의 눈높이를 뚝으로써 어린이 건강은 물론 국민 전체의 건강보호도 달성하기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될 수 있는 유해물질을 사전에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환경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올해 9월에 개정했다. 관련법은 2009년 3월에 제정되었으며 어린이활동공간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의 보육실, 유치원의 교실, 초등학교의 교실 및 도서관, 어린이가 사용하는 특수학교의 교실 등의 시설에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본 호에서는 환경보건법 상의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였다.

2. 환경보건법

환경부에서는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환경보건법 제4장에 어린이 건강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제23조에는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법 조항을 명시하였다. 어

린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정해야하며, 어린이공간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한다는 내용이다.

환경보건법
 [시행 2014.9.25.] [법률 제12524호, 2014.3.24., 일부개정]

제4장 어린이 건강보호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이하 "환경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노출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제한 대상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2. 제한 내용
3. 제한 범위

④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2.2.1., 2014.3.24.>

⑤ 환경부장관은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제한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시설의 개선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4.3.24.>

⑥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3조의2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확인검사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1.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증축하거나 수선한 때
- ⑦ 제23조의2에 따른 검사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검사 결과를 증명하는 증서를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3.24.>

⑧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확인검사에 부적합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3.24.>
[제목개정 2012.2.1.]

3. 환경안전 관리기준

환경보건법 시행령 상의 환경안전관리기준법과 이를 요약한 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9년 3월 22일 이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은 이미 법 적용을 받고 있으며, 그 이전에 설치된 공간의 기준 준수는 2016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단 연면적 430m² 미만 사립 시설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받는다.

환경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4.9.25.] [대통령령 제25626호, 2014.9.24., 일부개정]	
[별표 2]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제16조제1항 관련)	
1.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물은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페인트 등)가 벗겨지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실내 또는 실외의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 또는 마감재료에 함유된 물질이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1)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은 질량분율(質量分率)로 0.1퍼센트 이하일 것	
2) 납은 질량분율로 0.06퍼센트 이하일 것	
나. 실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을 방출하지 아니할 것	
3. 어린이활동공간의 시설에 사용한 목재에는 다음 각 목의 방부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도료를 사용하여 목재 표면을 정기적으로 도장(塗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1호 및 2호(A-1, A-2)	
나. 크롬·구리·비스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1호, 2호, 3호(CCA-1, CCA-2, CCA-3)	
다. 크롬·플루오르화구리·아연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CCFZ)	
라. 크롬·구리·붕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CCB)	
4.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모래 등 토양에 함유된 납,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및 비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을 것	
5.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해당 표면재료에 함유된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은 질량분율로 0.1퍼센트 이하일 것	
나. 해당 표면재료의 폼알데하이드 방산량(放散量)이 75mg/kg 이하일 것	
6. 삭제 <2014.9.24.>	

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실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소유한 사람 혹은 관리자는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증축하거나 수선할 때에도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제도는 유해물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됐으며 검사결과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은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확인검사를 받지 않거나 확인검사에서 부적합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확인검사는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축한 경우, 연면적을 33m² 이상 증축한 경우, 70m² 이상 수선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이러한 환경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 또는 관리자와 설치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 대상자가 요구하는 장소와 시간에 맞추어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4. 맺음말

환경부의 환경안전관리 진단사업과 교육은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을 보다 건강하고 환경친화적인 장소로 개선시켜 미래의 희망이자 귀중한 자산인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주변 환경을 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해당 시설 담당자 및 소유자의 경우 이러한 법의 취지에 맞추어,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 건강에 대한 지킴이로서의 사명감을 더욱 가지시기를 희망한다.